

18 (第123回-第3次)

<p>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 5. 토론 요지 : 생 략 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2명, 출석위원 12명 전원일치)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>서울특별시 다중이용화장실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도심지, 관광지역 등에서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개방하는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다중이용화장실”이라 함은 주유소, 음식점, 대형빌딩, 터미널, 극장, 예식장, 시장, 상가 등 다중이 모이는 건물에 부속된 화장실을 말한다. “보조금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권장하는 사업에 공익상, 시의 정책상 필요에 의거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 <p>제3조(보조금 교부대상 및 조건) ①도심지 및 관광지역(인사동·이태원거리, 남대문·동대문시장, 신촌 등)에 위치한 다중이용화장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보조금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화장실의 개방 2. 안내표지판, 안내유도 사인의 설치 및 부착의 허용 <p>제4조(교부 범위 및 방법, 기간) ①보조금의 교부범위는 화장실에서 사용된 소모품비, 전기료, 상·하수도료 및 개방으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의 수리경비를 포함한다.</p> <p>②보조금의 교부방법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정확한 가액산출을 근거로 매월 교부한다.</p>	<p>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규정한 수리경비는 현장을 실사하여 산정된 가액에 한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④보조금의 교부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.</p> <p>제5조(의무)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장실을 청결하고 체적하게 유지 2.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<p>제6조(제재)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.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. 제5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699</td> <td style="width: 10%;">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</td> </tr> </table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년 9월 19일, 서울특별시장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21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22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(2000. 10. 5 심사보류)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(2000. 11. 9 원안가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최령)</p> <p>가. 제안이유 체육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발전</p>	의안 번호	699	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
의안 번호	699	2000년 11월 일 문화교육위원회		